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5. 4. 30.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I. 결의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가. 제 안 자 : 김종길 의원 등 28명.

나. 제 안 일 : 2025. 02. 03.

다. 회 부 일 : 2025. 02. 06.

라. 의안번호 : 24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오늘날 전 세계 경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경제적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꾸준한 발전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각 정부와 기업은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해 앞다투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트럼프 당선인이 첫 번째 임기 중에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1% 단일세율로 낮춘데 이어 두 번째 임기 중에 미국 내 사업장의 법인세율을 15%까지 낮출 것을 공언함. 새로운 트럼프 정부의 효율을 이끌 일론 머스크는 지난달 의회를 방문해 “모든 공제를 없애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는 등 세제를 포함한 대대적인 규제철폐에 골몰하고 있음.

- 우리 정부도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인식해 2018년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2019년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2021년 규제 챌린지를 통한 민간의 규제 개선 제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경제인을 포함한 시민들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체감도는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임.
- 최근 서울시는 규제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향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성장과 민생 안정을 위한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1, 2, 3, 4호의 규제철폐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 각종 대내외적인 경제적 악재와 불확실성을 극복해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기업과 산업계를 규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가장 사업하기 좋은 자유로운 경영 환경을 구축하는 등 조속한 규제철폐에 앞장서 나서야 할 것임.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민간의 다양한 규제철폐 제안을 확인하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규제철폐 노력에 힘을 보태는 것은 물론이고, 주도적으로 이를 개선해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최현재)

1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취지

-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의 전반적인 규제철폐 추진 방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 차원에서 서울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철폐를 제안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임.

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

- 서울시는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을 살리기 위해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는 각오로 ‘규제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핵심과제 삼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¹⁾.
 - 2025년 1월 14일,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일반 시민 100명을 초청하고, 일상 속 규제 및 업종별 규제, 서울시가 도입 또는 추진해야 할 정책 등을 논의하며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²⁾.
 - ‘100일 규제 집중신고제’를 운영하여,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불필요한 규제를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규 신고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중·장기 검토 및 불수용 과제 전면 재검토하도록 함.
 -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지속 제기된 규제 관련 시민 불편사항을 전수조사하여, 관행적으로 유지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분야별, 기관별 규제 중 개선 필요성이 있는 안건을 제출하고, 사업 지연을 일으키는 내부 규제를 재검토하도록 함.

1)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규제 철폐 100일 실행계획, 2025.1

2) 서울특별시, 시민이 묻고 오 시장이 직접 답한 규제철폐 대토론회… 규제풀어 민생 살린다, 2025.1.14

- 시민과 공무원이 발굴·제안한 안건 일체를 서울연구원(규제개혁혁신연구단)이 행정적인 규제철폐 방안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담은 구체화된 안건으로 작성하도록 함.
- 구체화한 안건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를 통해 원점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성 및 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규제철폐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함.
- 심의회 권고안은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민·관이 공동으로 검토하며, 전문적 분석과 행정적 현실성을 결합하여 합리적이고 실행력 있는 최종 의사결정을 도출함으로써 규제철폐 안건을 총괄 심의함.

< 서울시 규제철폐 추진 절차 >

단계	제안	분류·구체화	권고안 마련	최종결정
역할	①시민 의견수렴 ②직원 창의제안	①규제와 단순민원 분류 ②규제철폐 제안 구체화	①규제 심사 ②규제철폐 권고	규제철폐 결정
주체	시민·공무원 (市 기획조정실)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	민간전문가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시장 및 민간전문가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
시기	수시 (1-3월)	수시 (1-3월)	주 1회 (1-3월)	총 3회 (2-3월)

자료: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규제 철폐 100일 실행계획, 2025.1

- 2025년 1월 6일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1·2호 발표를 시작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시민 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규제철폐안을 추가로 선정하여, 2월 17일 총 32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하였음³⁾.

< 서울시 규제철폐안 >

구분	규제철폐안	담당부서
1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도시계획과
2호	환경영향평가 분안평가 면제 대상 확대 및 절차 완화	친환경건물과
3호	도시규제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	주거정비과
4호	통합심의회 소방성능·재해분야 포함	주거정비과
5호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정원도시정책과

3) 서울특별시, 서울시, 낡고 오래된 규제 더 찾아냈다… 10건 추가발표·현재 총 32건, 2025.2.16

6호	입체공원 제도 도입	시설계획과
7호	서울매력일자리 중장년 참여자 연령 상한 폐지	일자리정책과
8호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 기준 폐지	돌봄복지과
9호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	자치행정과
10호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당특약 방지	재산관리과
11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상권활성화과
12호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도시관리과
13호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폐지	건설혁신담당관
14호	도심지 특성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	계약심사과
15호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	계약심사과
16호	정보화사업 심의 절차 개선	정보시스템과, 계약심사과
17호	공유재산 취득·처분·관리 기준 가격 상향	재산관리과
18호	계약심사 대상 및 기준 현실화	계약심사과
19호	기후예산제 운영 개선	기후환경정책과
20호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 확대	아이돌봄담당관
21호	창업지원시설 입주 절차 간소화 등	창업정책과
22호	공공시설 이용시간 연장	어르신복지과, 다문화담당관
23호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개선	건축기획과
24호	단가계약 급수공사 작업지시 건별 도급액 제한 완화	급수설비과
25호	상수도 단가계약공사 설계변경 기준 완화	안전조사와
26호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영유아담당관
27호	다문화가족에 대한 임신부 교통비 신청서류 간소화	저출생담당관
28호	차량진출입로(승차구매점 포함) 설치시설 요건 완화	보행환경개선과
29호	수의 방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대상 명확화	재산관리과
30호	위원회의 불필요한 심의절차 및 운영방식 간소화	디자인산업담당관 문화유산보존과, 산업입지과
31호	서울디자인재단 민간 계약체결 제출서류 간소화	서울디자인재단
32호	사회적 고립가구 개문 손상비 보전체계 마련	서울시복지재단

○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울시 규제철폐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서울시 규제철폐안이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현안과 연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서울시 규제철폐안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되어 있어, 특별위원회 구성요건⁴⁾에도 부합함.

4)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회 결과

- 결의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제2항⁵⁾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 사전협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운영위원회가 사전협의와 업무지원에 동의하였으며,
 -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부서 의견 없음.

담당 연락처

02-2180-7688

5)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특별위원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에도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